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연금소득세 총액을 국민연금공단에 지원 〉
■ 이소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8453호)

2025.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연금소득세 총액을 국민연금공단에 지원	3
가. 개정안의 내용	3
나.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	4
다. 검토의견	9
라. 관계 기관 의견	13

I. 개요

1. 이소영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8453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이소영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5. 2. 26.
- (3) 회 부 일 : 2025. 2. 27.

나. 제안이유

2023년 3월 정부가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은 2041년 적자 전환 후 2055년에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에 국회는 국민연금의 개혁을 위하여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으나, 정부는 더내고 덜받는 방안만을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단순히 더내고 덜받는 방안은 재정안정에는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국민의 노후빈곤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세대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등 국민연금제도의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보다 책임있는 국민연금재정 안정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원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임.

이에 현재 노후세대가 납부하는 연금소득세 총액을 국민연금에 지원토록 의무화하여, 일부라도 국민연금 재정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기금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정부는 「소득세법」에 따른 연금소득세 총액을 공단에 지원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3조의2 신설).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연금소득세 총액을 국민연금공단에 지원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매년 「소득세법」에 따른 ‘연금소득세’의 총액이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지원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u>제43조의2(기금재정에 대한 정부지원)</u> <u>정부는 매년 「소득세법」에 따른 연금소득세 총액을 공단에 지원하여야 한다.</u>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

-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연금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과 함께 이 법에 따른 ‘종합소득’을 구성하는 소득의 일종으로,¹⁾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하 “공적연금 관련법”이라 한다)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과 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인출하는 경우의 그 연금(이하 “사적연금소득”이라 한다) 등이 「소득세법」에 따른 ‘연금소득’에 해당함.²⁾

- 공적연금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 및 제143조

1)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 가. 이자소득
- 나. 배당소득
- 다. 사업소득
- 라. 근로소득
- 마. 연금소득
- 바. 기타소득

2) 「소득세법」

제20조의3(연금소득)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
-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 가. 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 나. 제59조의3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 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 라. 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移延)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의2제1항에 따라 국민연금공단·공무원연금공단 등 각 공적연금의 운영주체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급여를 지급하고, 공적연금소득에 대하여도 이 법에 따른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므로 같은 법 제143조의4에 따른 ‘공적연금소득세액 연말정산’을 통하여 소득세액을 산출·결정하는데,³⁾

그 밖에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으로 합산되어 과세되므로, 공적연금소득세액 연말정산에 따라 산출·결정된 세액이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의 확정적 수치는 아님.

- 국세청에 따르면, 과세연도가 2023년인 공적연금소득세액 연말정산에 따라 산출·결정된 소득세액은 1,973억 8,700만원으로, 2013년(34억 5,100만원) 대비 약 57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각 공적연금관리기관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공적연금 종류별 산출·결정된 소득세액은 공무원연금(47.0%), 국민

3)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5. 연금소득

제143조의2(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제143조의4(공적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연금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 연금소득금액에 그 연금소득자가 제143조의6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인적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고, 그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그 세액에서 자녀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한 세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 자녀세액공제 및 표준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의 합계액이 해당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은 해당 연금소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43조의6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연금소득자에 대해서 제1항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에는 그 연금소득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을 적용한다.

④ 공적연금소득을 받는 사람이 해당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사망자의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13. 1. 1.>

연금(28.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17.2%), 군인연금(7.4%) 및
별정우체국직원연금(0.2%) 순으로 많음.

< 공적연금소득세액 연말정산 결과 >

(단위: 백만원)

구분	'23						'22	'21
	계 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우체국연금		
세액	197,387	55,699	92,787	14,717	34,054	349	132,404	88,640
구분	'20	'19	'18	'17	'16	'15	'14	'13
세액	61,969	42,875	29,868	19,619	13,393	8,421	4,208	3,451

주: 사후 경정신고 또는 사망자 등 비정기적 정산 등의 사유로 개별 공적연금관리기관이
제출한 자료와 국세청 자료(총계)가 서로 일치하지 않음

자료: 국세청 및 국민연금공단·공무원연금공단·국군재정관리단·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 사적연금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제1항4)
에 정하여진 ‘인출 순서’에 따라 과세 여부와 원천징수세율이 달라
지는데,

제일 먼저 「소득세법」 제59조의3제1항5)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
제를 받지 아니한 납입액 등 ‘연금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과
세제외금액’이 인출되는 것으로 보고,

4)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연금계좌의 인출순서 등) ① 연금계좌에서 일부 금액이 인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
액이 순서에 따라 인출되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이하 “과세제외금액”이라 한다)
2. 이연퇴직소득
3.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

5)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
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
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제146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2.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그 다음으로 같은 법 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이 인출되는 것으로 보아 여기에는 같은 법 제129조제1항제5호의3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며,⁶⁾

마지막으로 같은 법 제59조의3제1항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이나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이 인출되는 것으로 보아 여기에는 같은 법 제129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되,⁷⁾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이나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에 따른 사적연금소득(의료목적·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된 사적연금소득은 분리과세연금소득으로서 제외)이 연간 1,500만원 초과 시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과세됨.⁸⁾

6)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5의3.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이 경우 연금 실제 수령연차 및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인 경우: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70

나.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60

제146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 해당 거주자는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2.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7)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5의2.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이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수령한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이 경우 각 목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때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가. 연금소득자의 나이에 따른 다음의 세율

나이(연금수령일 현재)		세율
	70세 미만	100분의 5
70세 이상	80세 미만	100분의 4
80세 이상		100분의 3

나. 삭제 <2014. 12. 23.>

다.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4

- 국세청이 발표한 사적연금소득의 원천인 연금계좌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과세연도 2023년 기준 원천징수세액은 총 2,754억 6,800만원으로, 2014년(137억 5,100만원) 대비 약 20배 이상 증가하였음.

< 연금계좌 원천징수 신고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23	'22	'21	'20	'19
원천징수세액	275,468	246,751	201,900	164,929	134,063
구분	'18	'17	'16	'15	'14
원천징수세액	101,297	73,584	50,198	29,679	13,751

자료: 국세청

-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는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서에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연금소득세는 총 4조 8,457억원(연평균 9,691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하였음.

< 연금소득세 총액 추계 >

(단위: 억원)

구분	'26	'27	'28	'29	'30	합계	연평균
연금소득세	7,845	8,767	9,800	10,574	11,471	48,457	9,69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8)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9.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금소득(다목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

가.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나.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

다. 검토의견

□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공단의 국민연금사업 관리·운영비 일부인 100억원⁹⁾과 출산크레딧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 데 드는 비용의 일부인 12억 8,800만원¹⁰⁾ 및 실업크레딧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에 지원되는 연금보험료의 일부인 319억 7,200만원¹¹⁾ 등 총 423억 6,000만원이 일반회계에서 국민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전입되고 있는데,

공단 관리운영비 및 출산·실업크레딧 운영비 등에 대한 일반회계의 부담 비율을 상향하여 국가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우리 위원회 국정감사와 예·결산 심사 등에서 지적되어왔음.

- 참고로 공단 관리운영비에 대하여는 2010년 이후 매년 100억원(정액)이 기금에 전입되어왔고(2025년도 공단 관리운영비는 총 5,844억 9,000만원이므로 일반회계의 부담 비율은 약 1.71%임),

출산크레딧에 따른 비용은 일반회계와 기금이 각각 30%와 70%를 분담하고 있으며, 실업크레딧에 따른 비용은 가입자 자부담 외에 일반회계·국민연금기금·고용보험기금이 각각 25%씩 분담하고 있음.

9) 「국민연금법」

제87조(국고 부담) 국가는 매년 공단 및 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연금사업을 관리·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10) 「국민연금법」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③ 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11) 「국민연금법」

제19조의2(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③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려는 경우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연금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 제101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 및 「고용보험법」 제78조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개정안은 국민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금에 대한 일반회계의 지원을 선제적으로 늘려 미래세대의 부담을 낮추어 주되, 그 지원의 재원을 기성세대가 납부하는 연금소득세로 특정함으로써 세대 간 형평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다만, 안 제43조의2는 「소득세법」에 따른 연금소득세 총액을 ‘공단에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조 제목은 ‘기금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인바, 지원 대상을 일관되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기금의 재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제101조제2항¹²⁾은 연금보험료, 기금 운용 수익금, 적립금, 공단의 수입지출 결산상의 잉여금을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정부 출연금은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데, 실제로는 일반회계로부터 매년 지원을 받고 있는바,

현행법 제101조제2항에 ‘정부의 출연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추가하고, 연금소득세 총액을 기금에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연금소득세 총액을 기금에 지원하도록 규정하더라도 현행법 제43조¹³⁾에 따라 공단은 기금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2) 「국민연금법」

제101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연금보험료
2. 기금 운용 수익금
3. 적립금
4. 공단의 수입지출 결산상의 잉여금

13) 「국민연금법」

제43조(공단의 수입·지출) 공단의 수입은 국민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국가 보조금, 차입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하고, 지출은 이 법에 따른 각종 급여·적립금·환부금(還付金)·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 그 밖에 공단의 운영과 사업을 위한 각종 경비로 한다.

□ 또한, 공적연금소득세액 연말정산이나 사적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로 그 최종 세액이 확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금소득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과세되며 그 세율은 누진적이므로, ‘종합소득세액’ 중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을 정확히 분리·산출하는 것은 제한된다는 점이 논의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소득세법」 제143조의4에 따른 공적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과 같은 법 제127조제1항에 따른 사적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에 따른 세액만큼을 기금에 지원하도록 하는 등 현행 세법상 금액을 명확히 산출할 수 있는 재원을 명시하되,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연도’와 「국가재정법」에 따른 ‘회계연도’ 간 불일치 및 같은 회계연도에서의 예산액과 결산액 간 차액 등을 고려한 정산 절차를 함께 규정하는 방안에 관하여도 입법례¹⁴⁾ 등을 참고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아울러 전체 공적연금소득세액 연말정산 결과('23)에서 국민연금 수급자가 납부한 소득세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8.2%로, ‘연금소득에 대한 세액’ 전부를 국민연금에만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 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됨.

□ 한편 법제적 측면에서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공단의 회계연도¹⁵⁾를 고려하여 안 제43조의2의 시행일(2026년 1월 1일) 이후 예

1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82조(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 ④ 교통·에너지·환경세전입액의 예산액과 결산액 사이에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결산 연도의 다음 연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예산 계상) ③ 내국세 및 교육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금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 회계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15) 「국민연금법」

제42조(공단의 회계) ① 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산안을 편성하는 경우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할지 등에 관한 적용례가 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참고로,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에서 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연금사업을 관리·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전부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김성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34호)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라. 관계 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신중검토

- 국민연금 재정안정에 기여하려는 취지에 공감하나, 특정 세원을 특정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조세·재정당국과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개정안 수용 시 연금소득세 총액을 공단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법」 제101조제2항에 국민연금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명시하는 것이 연금재정의 안정화라는 입법 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임.

□ (기획재정부) 수용곤란

-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의 기본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국고지원은 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선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특정 세입을 특정 세출로 연계하는 ‘칸막이식 예산’은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06